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443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취득(증축)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면적 (㎡)	금액 (천원)	소관 기관
1	체육관 증축	면목중	중랑구 용마산로 70길 43	994	2,495,934	동부
2	체육관 증축	월촌중	양천구 묵동서로 31	994	2,900,000	강서 양천
합 계				1,988	5,395,934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1부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I . 목적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취득·처분 관리의 적정을 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 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III . 기본방침

1.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

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 1)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2)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나. 중요재산의 범위

구 분	취득의 경우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¹⁾ 기준	20억 이상	20억 이상
1건당 토지면적 기준	6천㎡ 이상	5천㎡ 이상

다. 중요재산 중 1건의 범위

- 1) 같은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나.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아.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 타.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3. 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나.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다.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제외

4.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 가.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이 불가피하거나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매각한다.
- 나.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 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한다.
- 다. 관리계획에는 재정투자사업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V. 집행원칙

- 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본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 나. 본 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2016년도 제5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표

□ 취득(증축)

연번	사업명	기관명	소재지	면적 (㎡)	금액 (천원)	소관 기관
1	체육관 증축	면목중	중랑구 용마산로 70길 43	994	2,495,934	동부
2	체육관 증축	월촌중	양천구 목동서로 31	994	2,900,000	강서 양천
합 계				1,988	5,395,934	

〈사 업 설 명 서〉

1. 면목중학교 체육관 증축

가. 구 분 : 취득(증축)

나. 사업개요

- 기 관 명 : 면목중학교
- 소 재 지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0길 43(면목동)
- 일반현황

(단위 : 명, 실, m²)

2016학년도			보유교실 현황(실)					규 모(m ²)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관리실	기타 지원	계	부지	연면적	운동장
24	657	27.4	24	12	12	12	60	19,132	9,788.49	4,456

다. 사업배경

- 강당 겸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체육수업 및 다양한 특별활동 제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및 생활체육 공간 제공

라. 사업목적

- 기상에 따른 제한이 없는 실내체육 활동 및 다양한 특별활동 공간 확보
- 지역주민 문화·체육 공간을 통한 소통과 어울림 행정구현

마.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내역 : 건축연면적 994m²

※ 필로티 994m² 제외

- 위치 : 정보센터 남동측 별동 증축
- 소요예산 : 총 2,495,934천원
- 예산확보방안
 - 확보액 : 70,000천원
(2016.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70,000천원(설계비)
 - 확보예정액 : 2,425,934천원
(2017.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요구) 2,425,934천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6. 11. ~ 2017. 12.

바. 추진경위

- 2008.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관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 2012. 1. 동부교육지원청 체육관증축 5개년 추진계획
- 2012. 3. 서울시교육청 다목적 체육관 증축 5개년 중장기계획 재수립
- 2012. 4. 동부교육지원청 강당 겸 체육관 추진계획 변경
- 2016. 2. 2016.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보류)
※ 사유 : 우선순위 및 증축위치 재검토
- 2016. 4. 2016.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보류)
※ 사유 : 우선순위 및 증축위치 재검토
- 2016. 10. 2016.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사. 관리계획 변경내역 : 해당 없음

아. 특이사항

- 추가 사업추진 소요예산
 - 체육관 내부비품비 : 30,000천원

자. 향후 처리사항

- 2016. 11. 설계

- 2016. 12. 201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요구(시설비)
- 2017. 4. 공사
- 2017. 12. 준공

차. 사업완료 후 개선되는 사항

- 다양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및 실내체육 활성화
- 교직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시설의 역할 기대

카. 기타 참고자료

- 위치도 및 현황도
- 건물현황
- 소요예산 현황

참고2**건물 현황**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구조	연면적	안전등급
1	교사동(가동)	1990	철근콘크리트	6,895.00	B
2	정보센터	2001	철근콘크리트	1,348.06	A
3	급식실 및 식당(다울관)	2010	철근콘크리트	1,338.84	A
4	식당	1990	기타	82.50	B
5	양궁장	2011	철근콘크리트	80.56	A
6	창고	2002	기타	24.00	A
7	창고 겸 구령대	1990	조적조	19.53	B
합 계				9,788.49	

참고3 소요예산 현황

○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요구)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확보 현황	자체재원	특별 교부금	서울시 전입금	구청 전입금	기부채납	합계	비고
2016	확보	70,000					70,000	설계비
2017	예정	2,455,934					2,455,934	시설비
합 계		2,525,934					2,525,934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m², 천원)

실명	기준면적	사업비 및 산출근거	예산액	비고
체육관	994	체육관 : $2,111 \times 994 = 2,098,334$ 1층 필로티 : $400 \times 994 = 397,600$ 내부비품비 : 30,000	2,525,934	1.
합 계			2,525,934	

2. 월촌중학교 체육관 증축

가. 구 분 : 취득(증축)

나. 사업개요

- 기 관 명 : 월촌중학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1(목동)
- 일반현황

(단위 : 명, 실, m²)

2016학년도			보유교실 현황(실)					규 모(m ²)		
학급수	학생수	급당 인원	일반 교실	특별 교실	관리실	기타 지원	계	부지	연면적	운동장
48	1,480	30.8	48	13	11	4	76	10,772	10,741	3,120

다. 사업배경

- 강당 겸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체육수업 및 다양한 특별활동 제한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및 생활체육 공간 제공

라. 사업목적

- 기상에 따른 제한이 없는 실내체육 활동 및 다양한 특별활동 공간 확보
- 지역주민 문화·체육 공간 제공을 통한 소통과 어울림 행정구현

마.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내역 : 건축연면적 994m² ※ 필로티 면적 제외
 (1층) 필로티 994m²
 (2층) 강당 겸 체육관 994m²
 - 위치 : 운동장 동측 별도 증축

- 소요예산 : 총2,900,000천원
- 예산확보방안
 - 확보액 : 없음
 - 확보예정액 : 2,900,000천원
(특별교부금) 2,320,000천원
(양천구청 교육경비보조금) 580,000천원
- 사업기간 : 2016.12.~2018.08.

바. 추진경위

- 2016. 9. 월촌중학교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신청
- 2016. 9. 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의견 조회(강서양천 ⇒ 양천구청)
- 2016. 9. 체육관 건립 사업 추진 의견 회신(양천구청 ⇒ 강서양천)
- 2016. 10. 2016.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사. 관리계획 변경 : 해당 없음

아. 특이사항

- 필로티 활용 방안 : 주차 공간 활용

자. 향후 처리사항

- 2016. 10. 양천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 요청
- 2016. 12. 설계
- 2017. 7. 공사
- 201. 8. 준공

차. 사업완료 후 개선되는 사항

- 실내 체육활동의 기회 제공,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체력향상 기여

카. 기타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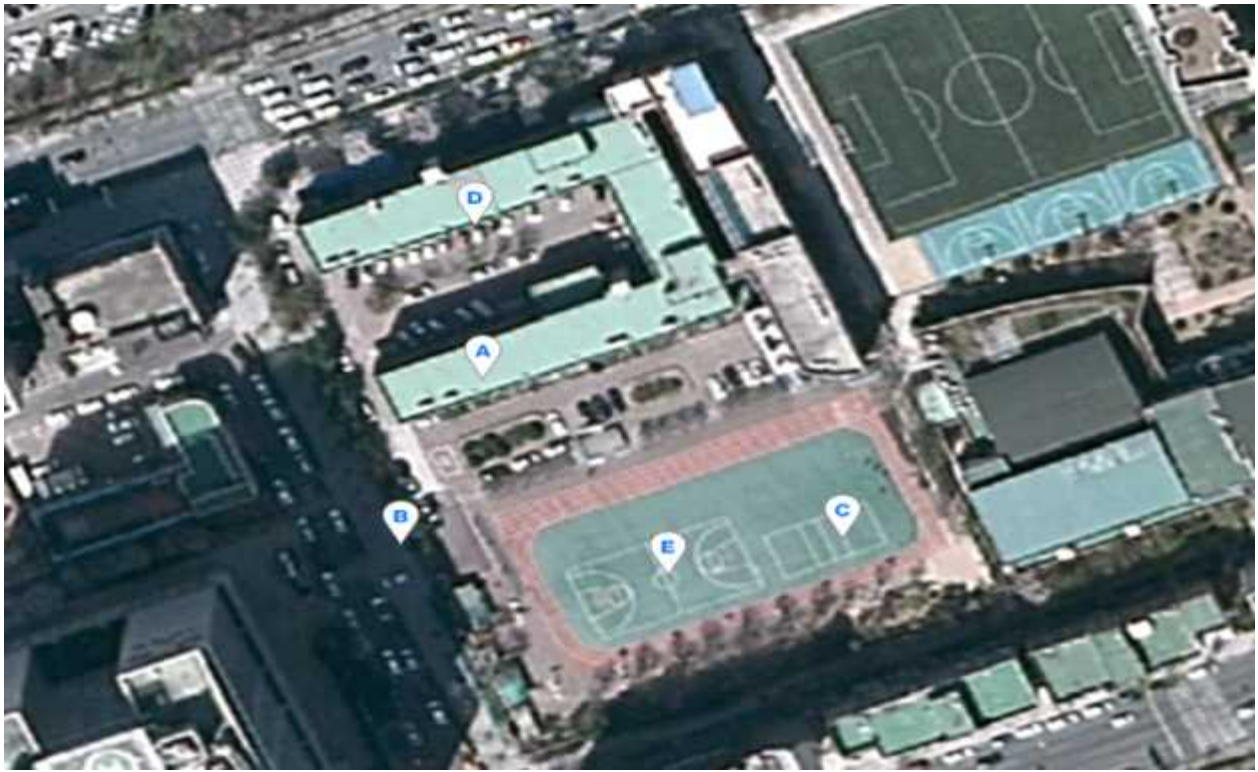
- 위치도 및 현황도
- 건물현황
- 소요예산 현황

참고1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현황도



참고2 건물현황

(단위 : m²)

연번	건물명	건축연도	구조	연면적	안전등급
1	본관동	1991	RC조	10,585	B
2	창고1	1991	조적조	72	B
3	창고2	2003	기타	53	B
4	수위실	1996	조적조	31	A
합 계				10,741	

참고3 소요예산 현황

○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요구)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확보 현황	자체재원	특별 교부금	서울시 전입금	구청 전입금	기부채납	합계	비고
2016	예정		70,000		300,000		370,000	설계비 (70,000)
2017	예정		2,250,000		280,000		2,530,000	시설비
합 계			2,320,000		580,000		2,900,000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실명	기준 면적	사업비 및 산출근거	예산액	비고
체육관	994	$994 \times 2,511 = 2,495,934$	2,495,934	2.
연결통로 태양광	95	태양광 설비 180,000 기타부대 공사 104,066 연결통로 $1,660 \times 72 = 120,000$	404,066	3.
합 계			2,900,000	